

자녀 결혼비용 마련대책과 결혼비용분석

An Analysis of marriage cost planning and marriage cost for
the childre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관리학과
대학원생 선진영
이화여자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관리학과
조교수 정순희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graduate student: Jin-Young Sun
Dept.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Assistant prof.: Soon-Hee Joung

〈목 차〉

- | | |
|------------|-------------|
| I. 서 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marriage cost planning and marriage cost for the children. Data were obtained from 306 households with at least one child married within past 5 years in Seoul.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rriage cost planning. The average marriage cost was 46,410,000won. Earned income, finance asset, child's sex, child's marriage type, the length of planning, whether debts were incurred or not and whether the property was sold for child's marriage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marriage cost. Finally, socio-economic variables and marriage cost planning variables played more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child's marriage cost than child related variables.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결혼이란 두 남녀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하여 한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개인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된다(장은영, 1990). 또한 결혼은 “사회적으로 용인된 남·녀 간의 성적·경제적 결합”인 만큼 사회적 관습이나 의식으로 인한 경제적 측면이 따르게 되며, 간접적 또는 직접적인 형태의 경제적 비용인 혼수가 결혼을 전후하여 수반된다(김용선, 1995).

서구의 결혼이 남녀간의 새로운 역할과 의무수행의 계약이며 이에 준해서 하나의 가족이 태어나는 것이라면, 한국의 결혼은 가족과 가족, 집단과 집단의 결합에 보다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안정남, 1990). 그래서 결혼준비 과정에 수반되는 결혼비용의 대부분을 부모가 부담하게 되고 개인의 사정에 무리가 있어도 부모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어서 양가의 재력경쟁의 인상을 줄 정도로 과도한 혼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전국주부교실중앙회, 1984).

더군다나 급속한 사회변동과 경제발전과 더불어 황금만능, 물질만능의 풍조가 만연하면서 결혼 당사자들의 애정이나 가치관보다 서로 마련해오는 혼수에 집착하는 폐단이 나타나 결혼비용은 자녀를 둔 부모에게 큰 압박감과 근심을 안겨다주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생의 첫 출발에 있어서 건전치 못한 폐습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냉고 있다.

점차 심화되고 있는 혼수문제는 지난 30년간의 도시근로자 소득에 대한 결혼비용의 비율변화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60년대이래 80년대까지 우리나라 결혼비용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15 배 정도였으나, 90년대에 들어 18~25배로 치솟았다(한겨레, 1996).

결혼당사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많은 결혼비용을 부모의 도움 없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직장생활을 통해 마련해야 하는데, 1996년 평균 결혼연령이 남자 28.4세, 여자 25.3세인 점을 고려한다면(조

선일보, 1997), 대졸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결혼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게다가 요즈음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과다 혼수 풍조는 우리사회의 결혼을 자녀와 부모간의 관계를 점점 비독립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결혼이 성인이 된 두 사람의 독립적인 만남이라는 신념은 실제 결혼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환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결혼기까지 거의 경제적 독립을 이루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높은 출세욕을 가지고 있어 ‘이왕이면 편안한 출발’을 갈망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안일한 물질 만능주의 타성 때문만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와 물가고, 특히 주택 가격의 폭등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자립의 꿈을 키우기보다는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에게라도 의존하여 결혼의 출발부터 편해 보자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최성애, 1993).

한편,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가 전국 11개 도시에 거주하는 신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 조사」를 보면 남녀 한 쌍이 결혼하는데 드는 평균 결혼비용은 6,430만원으로 주택마련비용(3천4백74만원)을 빼더라도 남자 1,181만원, 여자 2,109만원 등 남녀 합쳐 3,290만원으로, 이것은 1993년에 비해 26.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치를 통한 우리나라 전체 결혼비용은 연간 12조원으로 정부 예산의 21%수준이며, 1인당 결혼비용은 일본의 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0.5%가 본인의 형편상 결혼비용 지출이 가계에 부담이 됐다고 밝혔으며, 8.1%는 매우 큰 부담이 됐다고 대답하였다. 이것은 가계 경제적인 차원에서 볼 때 자녀결혼기 단계에 있는 가계에서는 자녀의 결혼비용마련이 주요 발달과업으로 결혼적령기에 이른 자녀를 둔 가정은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혼비용부담에는 ‘이 정도는 해야지 체면이 서지’라는 식의 나보다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한국인 특유의 체면 문화가 일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체면 중시 풍조로 인해 결혼 할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심리적 부담까지 지니게 된다.

이상과 같이 결혼비용은 자녀의 열악한 경제적 현실과 사회구조,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 등이 복합되어 자녀결혼기 가계에 커다란 부담을 주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녀의 결혼비용과 관련하여 가계관리문제나 재정문제를 다룬 연구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지금까지 혼수에 대한 연구는 각 단체와 신문, 잡지 등에서 기사를 위한 실태조사의 수준이거나 학술적인 접근을 한 것이라도 현상을 기술하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더군다나 거의 모든 연구와 조사가 결혼을 앞둔 미혼의 남성과 여성 또는 신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자녀를 결혼시킨 가계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대책과 자녀의 결혼비용을 분석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하여 자녀결혼기의 가계재정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용어의 정의

- 1) 결혼 : 결혼과 혼인은 동의어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법률상으로는 혼인이란 용어는 사용되나 결혼이란 용어는 사용되지 않는다. 의미 면에서 구별을 한다면 혼인은 제도적인 면을 중요시한 용어인데 반하여, 결혼은 인간관계 또는 상호관계를 중요시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 2) 결혼비용 : 일반적인 혼수, 혼비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결혼에 드는 비용이나 물건을 의미하며 결혼에서의 경제적 교환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뜻한다. 본 연구에서 결혼비용의 내역으로는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배우자 예단·예물 비용, 배우자 부모의 예단·예물 비용, 배우자 친척 예단 비용, 살림살이 비용, 주택 비용, 기타(함 값, 부케값 등) 비용을 말하며, 문맥에 따라 혼수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결혼비용에 대한 제관점

(1) 재산상속으로서의 결혼비용

농경사회가 진전되면서 경제발전과 양여축적이 어느 수준에 달하면 토지소유의 차등이 사회적 지위의 요건이 되고 재산상속의 양식의 변화와 함께 딸에게도 상속이 인정되는 문화가 출현하게 된다(최경숙, 1995).

Goody(1973)는 유라시아 사회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지참금은 결혼하는 딸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생전 상속(premortem-inheritance)으로서 혼인시 이전되는 여성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였으며, 결국 지참금을 부모가 딸의 지위유지를 위해 생겨난 분리상속(diverging devolution)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Casey(1989)도 지참금은 딸에게 재산상속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딸에게 재산을 줄 수 있는 아버지의 경제력을 과시하고 딸의 지위를 보존, 강화함으로써 시집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부과하고 남편의 절대적 권력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뿐 아니라, 특히 혼인이 해소될 때 자신의 재산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게 한다고 하며 친족의 혈연적 유대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부부 중심의 가구 우위 경향을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지참금의 혼인 관행은 결국 명예보다는 부의 추구를 더 강조하는 사회를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의 지참금의 의미를 연구한 Tambiah(1973) 역시 지참금의 본질적 의미를 신부가족의 딸에 대한 직접적 재산권 보장의 의미임을 강조함으로써 Goody(1973)와 동일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럽의 지참금관행에 관한 Hughes(1985)의 연구에서는 유럽의 중세 사회의 지참금에 대해 ‘지참금은 일종의 생전상속이므로, 딸의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권리 뒷은 아버지의 사망시가 아니라 결혼할 때 이미 소요되었으며, 실제 중세 지중해의 정부와 법은 지참금과 여성상속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했다’고 서술했고, 이는 지참금이 당시 유럽사회의 여성들에 대

한 합법적 상속의 통로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현대 그리스 지참금 제도의 기능과 구조, 결과에 대해 연구한 Lambiri-Dimaki(1985)는 그리스 민법의 정의상 지참금은 딸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뜻이고, 공식적, 법적 수준에서 부모들이 딸과 딸이 혼인해서 이루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보조로서 기본적으로 연약한 여성의 지위를 보호하고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었으나 실제의 혼인 성립 과정에서는 그러한 기능이 사라지고 여성들이 혼일 할 기회 혹은 장래성 있는 남편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본래의 유용한 목적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산업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유태인의 혼인 거래 관행을 연구한 Kaplan(1985)은 당시의 유태 사회는 이미 19세기 초반에 혼인의 기초로서 사랑의 개념이 도입되었음에도 혼인 성립과정에서 여전히 물질적 요인들을 중시했고 나이, 신분, 외모, 교육, 종교성, 거주 등이 복합적으로 교환의 요인이 되었지만 일차적 거래는 지참금과 신랑의 경제적 지위(특히 직업)의 교환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현대 사회의 결혼의 경제적 측면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신부의 지참금으로서 그것은 신부 부모의 딸에 대한 재산상속 혹은 경제적 지위 보장이라는 의미로부터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단순히 딸에게 신랑을 얻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특히 장래성 있는 신랑을 얻어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모했다고 할 수 있다(김모란, 1994 ; 최경숙, 1995). 그리고 박숙자(1991)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주택을 마련해 주는 등의 재산분배 또는 증여형식을 통해서 재산 형성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경향이 짙은 것으로 나타나, 딸의 결혼시 상속의 의미로 주어졌던 지참금이 오늘날에는 아들의 결혼비용에 까지 그 의미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참금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현재의 자녀 결혼비용의 의미를 상속 및 유산상속의 의미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홍공숙, 김순미, 김연정(1995)에 의하면 유산상속 이론은 이타적인 부모가 자신의 소비효용뿐 아니라

자녀들의 소비효용을 위해 자산을 저축하고 자녀들에게 인적자본투자를 한다는 이타적 유산상속동기이론(the altruistic bequest motive theory)(Becker, 1974 ; Tomes, 1981 ; Menchik & David, 1983), 부모가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서비스 대가로 자신의 소유자산을 서로 교환한다는 전략적 유산상속동기이론(the strategic bequest motive theory), 그리고 사망시기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죽음에 대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저축하지만 사망시기가 불확실하여 계획 없이 유산상속을 넘기게 된다는 우발적 유산상속동기이론(the accidental bequest motive theory)(Hurd, 1987, 1989)으로 구분하였다.

이타적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 소득능력과 생애 자원을 걱정하기 때문에 인적자본 및 경제적 자원이 적은 자녀에게 보상동기로서 유산상속을 하게 된다.

또 인적자본 투자이론 모델과 생애주기 모델을 결합하여 자녀의 교육투자와 유산상속에 대한 가계의 결정을 조사한 Ishikawa(1975)도 부모가 자신의 소비 외에도 자녀들의 복지를 위한 이타적 가족가치에 근거하여 중여나 유산을 남긴다고 하였다(홍공숙 외 2인, 1995 재인용). 한편 Becker와 Tomes(1979)에 의해 세대간의 이동성에 관한 균형이론은 가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가정, 즉 부모는 자신의 소비뿐 아니라 자녀의 복지를 통해서도 효용을 얻는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홍공숙 외, 1995, 재인용). 이러한 이타적 유산상속이론은 부모가 성인이 된 후에도 자녀를 위하여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고 책임져 주려는 의미에서 자녀의 결혼시 결혼비용의 상당부분을 당연하게 부담하는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

(2) 교환이론에 의한 결혼비용

현대사회의 결혼비용은 지참금이나 신부값의 전통적 의미를 상실하고 배우자와 배우자 가정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환의 조건으로 변모하였는데, 신랑과 신부 양측의 동일한 가치의 교환 곧 공정한 교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이익극 대화 원리보다는 분배정의의 원리와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교환이론 중 분배정의의 원리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Homans(1974)의 교환이론은 이익추구적 교환을 야기시키는 이익극대화의 원리(maximization of the profit)와 공정교환을 유도하는 분배정의의 원리(justice of distribution)로 구분할 수 있다. 교환이론의 이익극대화 원리에 따르면 사회적 행위의 가장 원초적 형태를 교환으로 보는데, 사회적 교환에서 우선 인간을 철저하게 계산에 입각한 타산적인 경제적 인간으로 설정하고 교환하는 행위가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의 이익극대화원리에 의해 일차적으로 지배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이익극대화는 보상(reward)을 최대로 하고 비용(cost)을 최소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교환이론가들은 이 원리가 누구에게나 타산적으로 보이는 행위뿐 아니라 곁으로 보기에도 종교적이고 이타적인, 그리고 감정적인 행위까지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 행위의 거의 모든 영역에 무제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분배정의원리에 따르면, 타인과 교환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자의 보상이 그의 비용에 비례할 것을 -즉 보상이 클수록 비용이 클 것을- 그리고 각자의 최종 보상 혹은 이익은 그의 투자에 비례할 것을 -즉 투자가 클수록 이익이 커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즉 교환관계에 있는 행위자들은 무조건 최대의 이익을 얻는 방향으로 행위 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의 다른 성원에 비추어 자신이 투여한 노력이나 투자, 비용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자 하는 분배정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행위하며 공정한 결과를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익은 많으나 불공정하기보다 이익은 덜하지만 공정한 결과를 추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교환이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사람들은 받은 보상의 양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지만 자신이 더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불만스런 감정에 그치지만 자신과 동일한 양의 투자나 비용을 투여한 타구성원들에 비추어 자기가 기대했던 만큼의 보상을 받지 못할 때에는 분노를 일으킨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Ekeh(1976)는 이익극대화 원리는 다수인으

로 이루어진 집단에서 더 확실히 나타나는 반면 분배정의의 원리는 양자관계(dyadic relationship)에서 인간행위에 보다 적절히 적용될 수 있음을 경험적 연구를 통해 보여주었다. 즉 보상의 최대화와 비용의 최소화를 원칙적으로 하는 이익극대화 원리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개인적 차원의 비교(intrapersonal comparison)인데 비해, 사용된 비용만큼의 보상, 받은 보상만큼의 비용, 즉 비용이 클수록 보상이 크고 보상이 클수록 비용이 커지다는 원칙을 지니는 분배정의의 원리는 상대방을 고려하는 상호적 비교(interpersonal comparison)라는 것이다. 이익극대화 원리는 상호간 비교가 여의치 않은 다수집단에서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되는 반면 분배정의원리는 그러한 비교가 쉽게 가능한 양자관계에서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Ekeh(1976)의 논의를 통해 볼 때 배우자 선택의 과정에서는 이익 극대화의 원리가 더 잘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결혼의 성립과정의 일부로서 재산이전이나 혼수의 주고받음 등 결혼비용의 지출은 여러 배우자를 중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배우자가 선택되어 신랑/신부측 대 신부/신부측의 양자관계가 성립된 이후 양측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상대측과 상대측 가정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로서 제공하는 교환의 조건, 즉 신랑과 신부 양측의 동일한 가치의 교환 곧 공정한 교환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개념상 이익극대화 원리보다는 분배정의의 원리와 더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수로 인한 불화 사례에서 빈번히 발견되는 신랑과 신랑가족의 폭력에까지 이르는 강도 높은 불만 표출은 받은 물질의 절대적 양이 적은데 연유한다기보다 자신들의 자격에 비추어 마땅히 받을 만큼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데서 온다는 사실에서도 혼수 교환이 단순한 이익추구적 교환이 아닌 분배정의의 원리가 작용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이러한 Homans(1974)의 분배정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3가지 규칙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집단의 한 성원이 다른 성원들로부터 보상의 방식으로 받는 것의 가치는 그가 다른 분야에서

기여한 행위들이 그들에게 주는 가치에 비례한다. 둘째, 집단의 한 성원이 다른 성원들로부터 받은 보상의 가치는 그의 투자에 비례한다. 투자의 정의에 대해 Homans(1974)는 ‘한 개인의 배경적 특성들 중 상당수는 그가 다양한 집단과 작업에 투여한 시간과 능력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므로 우리는 그것을 분배정의의 목적상 투자라고 칭한다.’고 했다.

셋째, 집단의 한 성원이 보상의 방식으로 받는 것은 그가 포기하는 것, 즉 비용에 비례해야 한다.

이상 분배정의의 3법칙들 중 신랑의 배경적 특성들은 여러 측면에서 현재나 앞으로 결혼생활에 신부에게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요인으로 신부측에 기여하는 가치로 개념화 될 수도 있고 신랑의 직업 같은 요소는 앞으로 투여할 노력과 시간을 생각할 때 비용으로 개념화 될 수도 있다. 또 직업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직업은 그것에 투여하는 비용이 결과적으로 신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상대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므로 Homans(1974)의 개념상 분명히 상대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비용적 요소를 포함한다는 점에는 첫 번째와 세 번째 법칙이 적용가능하고, 현재 한국 사회의 혼인거래관행을 연구할 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요 변인은 직업, 학력, 학벌,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혼인당사자, 특히 신랑의 사회경제적인 배경적 특성들로서 상대로부터의 보상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투자의 개념에 가장 근접한 두 번째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즉, 교환관계상 신부측의 교환조건이 되는 것은 혼수등 물질적 기여인데 그것은 정의상 투자보다 상대방에게 기여한 가치 혹은 포기한 것으로서 비용에 가깝기 때문에 첫번째나 세번째 법칙은 신부측을 주체로 보았을 경우에 적합하다. 그리고 결혼비용 지출은 이미 배우자가 선택된 후 시점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므로 신랑의 교환조건으로 규정한 신랑의 배경적 특성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신부측의 혼수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유동적 변수이므로 두 번째 법칙은 신랑측을 입장에 더 적합하다.

2. 관련변수의 고찰

(1) 사회경제적 변수

1) 남편 학력

남편의 학력은 그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기반이 되고 자녀의 결혼비용은 부모의 경제적 지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결혼비용이 많다고 하였다(김모란, 1994). 박민자(1991)의 연구에서도 시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며느리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혼살림의 여러 가지 많은 품목을 장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남편의 직업

부모의 직업은 그 가정의 소득과 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최경숙(1995)의 연구에서는 부모직업이 사업가인 그룹에서 총비용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부모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 더 많은 결혼비용을 쓸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3) 가계소득

소득은 가정생활의 경제적인 근원으로써 가정경제의 구체적 운영을 위한 지출의 최고한도를 제시하는 기준이 된다. 김모란(1994)의 연구에서 보면 처가의 경제력과 신부측 비용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기춘과 조은정(1992)의 연구에서도 자녀의 현재 경제적 능력보다는 그들 부모의 경제력이 결혼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능력이 가장 크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가정의 주소득을 측정하는데 주로 근로소득을 이용하였으나, 주소득원인 만큼 자녀만을 위한 지출이 아닌 가족원 전체를 위한 지출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근로소득 이외의 비근로소득은 지출범위의 여유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근로소득과 자녀결혼비용의 관계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근로소득과 다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

다고 생각된다.

4) 가계 자산현황

가계 자산은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과 더불어 가장 보편화된 경제수준의 척도가 된다. 정용선(1995)의 연구에서 보면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혼수가 많아졌다. 김모란(1994)의 연구에서도 시댁의 경제력은 신랑측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산을 많이 보유 할수록 자녀의 결혼에 더 많은 비용을 들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2) 자녀관련 변수

1) 자녀의 성별

김경희(1983)의 연구에서 보면 신랑측 총지출액 내 역으로는 배우자 폐물비, 주택비, 가구, 가전제품, 주례사례비 등이다. 이 중 주거비는 지출비용이 가장 큰 비목으로 주거비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비용보다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부측 총지출액 내역을 보면, 폐물비, 신랑 물품비, 예단비, 가구 및 가전제품비, 수공예품비, 납폐 및 약혼식비, 드레스비, 신부화장, 부케비, 합값 등이 있는데 지출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가구 및 가전제품비를 들 수 있으며, 비교적 큰 가구류에 속하는 것은 신랑측에 서 준비하는 성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공동 지출내역도 남녀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과 조은정(1992)의 연구에서 보면 결혼비용의 남녀비중을 계산해 보면 평균적으로 여자측이 총 결혼비용 중 61.5%를 남자측이 38.5%를 담당하였다. 특히 여자측의 80.1%가 결혼비용의 50%이상을 부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결혼비용의 여자측 부담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곧 결혼적령기의 딸을 둔 부모의 경제적 부담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여자측의 비용부담률은 배경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신부측에서 결혼비용의 대부분 을 부담하는 것, 혹은 신부측의 결혼비용의 대부분 을 부담하는 것, 혹은 신부측의 결혼비용이 신랑측 보다 훨씬 큰 것은 사회경제적 특성, 결혼과정 및 시댁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관없이 보편적인 현상임

을 알 수 있다.

2) 자녀의 학력

김경희(1983)의 연구에서 보면 남·녀 관계없이 학력이 높을수록 총 비용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장은영(1990)의 연구에서도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시부모 예단을 많이 장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배우자 양복, 시부모 예단, 생활용품, 가전제품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기춘과 조은정(1992)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의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 결혼비용과 결혼비용 중 그 비중이 큰 신혼주택비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녀의 소득

유현주(199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의 결혼비용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 결혼비용의 부담은 작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행숙(1982)은 자녀의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식을 화려하게 치르겠다는 경향도 높았고, 신부예물 준비금액도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 자녀의 소득이 높아지면 그에 따라 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과 부모의 자녀 결혼비용은 별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4) 자녀의 직업

자녀의 직업은 자녀의 소득 및 학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자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부모의 자녀결혼비용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지만, 총 결혼비용은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을 것이다.

5) 자녀의 결혼형태

장은영(1990)의 연구에서는 연애결혼인 집단에서 남편의 예물과 가전제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행숙(1982)과 이기춘과 조은정(1992)의 연구에서는 결혼비용이 결혼형태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자녀 배우자의 직업

김모란(1994)의 연구에서 보면 신랑의 직업이 고위 전문기술직이나 관리직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을수록 신부의 부모가 부담하는 결혼비용은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신랑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

력이 안정되고 보장된 직업일수록 신부족의 혼수의 양이 커지거나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부의 직업지위는 신랑측 결혼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 사돈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김모란(1994)의 연구에서 보면 시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지면 신부족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댁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부족비용의 연관성은 부모가 부담하는 결혼비용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나 주택비용과 친정부모 보조비에서는 시댁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신부족비용이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런 결과는 시댁이 경제력이 있는 경우 신혼가구에 대해 어느 정도 물질적 보조를 해주므로 신부족의 신혼가구에 대한 경제적 배려가 적어지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신랑측 비용의 관계를 보면 친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혼인비용의 세부항목들을 포함하여 모든 항목에서 신랑측비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자(1991)의 연구에서도 시댁의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주택을 마련해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3) 결혼비용 마련대책 변수

1) 결혼비용 마련방법

채정숙(1980)의 연구에서 보면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46.3%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들은 물론 결혼을 앞둔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비용은 결혼당사자는 물론 부모들에게 커다란 부담과 함께 많은 저축을 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숙(1982)의 연구에서는 결혼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저축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이용률이 과반수 이상으로 그 중 은행예금이 30.9%였고, 그 다음으로는 계가 27.9%로 나타났다. 요인별로 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계의 이용률이 높은 반면, 나이가 많을수록 은행예금이나 재형저축 등의 금융기관 이용률이 많으며,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계를 이

용하고 학력이 높은 집단에서는 금융기관의 저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1990)의 조사결과,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 이용하는 방법은 저축 80%, 빚 7%, 재산처분 0.05%, 은행융자 0.02%, 결혼축의 금 0.01%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자녀의 결혼을 위해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보이나 빚이나 재산처분 등으로 힘겹게 마련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다.

2) 결혼비용 마련기간

이행숙(1982)의 연구에서 보면 결혼비용 마련을 위한 대책으로 저축을 하고 있는 기간을 볼 때 과반수가 2년 이상(66.3%)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별로는 직업이 무직, 생산직, 안내원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저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업관계로 저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결혼비용 부담률

한국소비자보호원(1990)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였는가에 대한 부모의 귀속계층별 분석을 보면 중상층에서는 60%이상이 대부분 부모부담이라고 응답한 반면, 하류층에서는 대부분 본인부담이 39.1%, 대부분 부모부담이 26.1%로 나타나 계층별로 혼인비용 부담양상은 다르며 중산층이상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혼인비용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었다. 이기춘과 조은정(1992)의 연구에서는 총 결혼비용을 마련하는데 각 방법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남녀 결혼비용을 부모가 전담한 경우가 37.5%와 37.7%였으며, 부모로부터 전혀 도움 받지 않은 경우가 각각 22.9%와 18.3%에 지나지 않았다. 또 결혼비용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정도는 남자와 여자 모두 학력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나 대졸이상인 집단에서 부모 의존정도가 더 높았다. 이것은 학력이 대졸이상인 집단의 부모들은 경제적 자원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교육시간이 길어져 자녀가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소득을

벌어들일 기간이 짧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력과 부모의 결혼비용부담은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조사대상 가계의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대책과 결혼비용 지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 자녀관련 변수가 결혼비용 마련 대책에 미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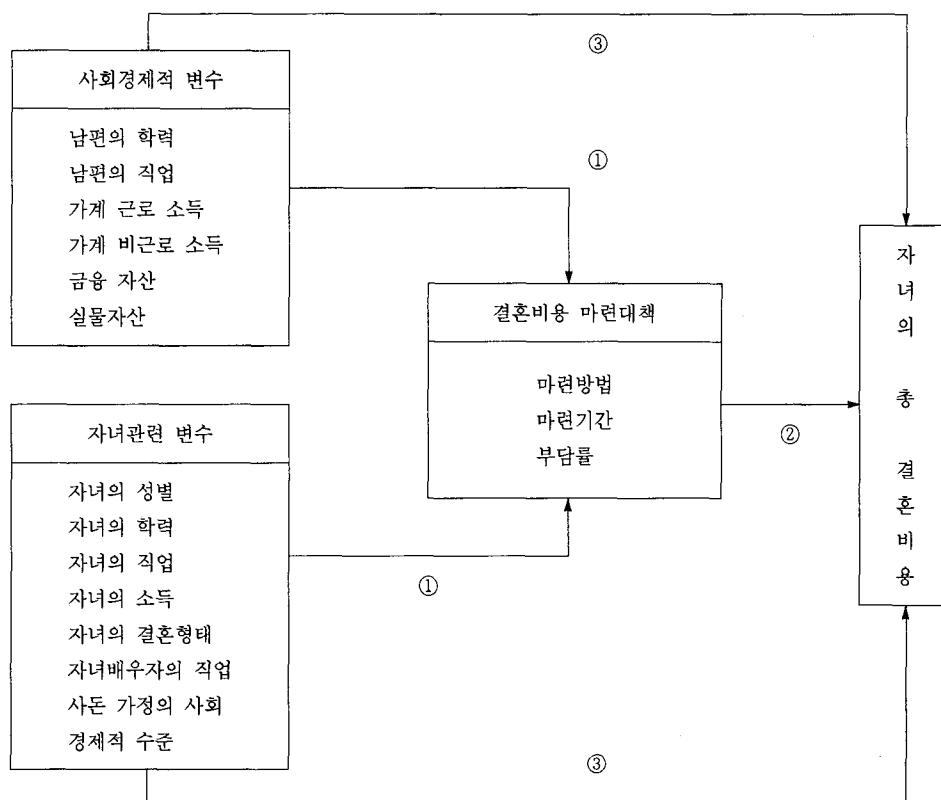
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연구문제 2) : 결혼비용마련 대책에 따라 결혼비용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 결혼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2. 측정도구의 구성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지는 조사대상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관한 문항, 자녀에 관한 문항, 결혼비용 마련대책에 관한 문항, 그리고 결혼비용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 및 측정 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 의 및 측정방법
<u>종 속 변 수</u> 자녀의 총 결혼비용	결혼식비용 + 신혼여행비용 + 배우자 예물비용 + 배우자 부모의 예물 예단비용 + 친척예단비용 + 신혼살림비용 + 신혼주택비용 + 기타비용
<u>사회경제적 변수</u>	
남편의 학력	교육년수
남편의 직업	직업지위 ^a
월평균 가계소득	남편의 근로소득 + 부인의 근로소득(만원/월)
근로소득	자산소득 + 이전소득+기타소득(만원/월)
비근로소득	현금+예금+계불입금+증권+보험+사채준금액(만원)
금융자산	주택+คอนโด미엄+건물+토지+골동품+귀금속(만원)
실물자산	
<u>자녀관련 변수</u>	
자녀의 성별	1=남자, 0=여자
자녀의 학력	교육년수
자녀의 직업	직업지위 ^a
자녀의 소득	급여(만원/월)
자녀의 결혼형태	1=중매, 0=연애
자녀 배우자의 직업	직업지위 ^a
사돈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1 - 9점 (1=하의 하층, 5=중의 중층, 9=상의 상층)
<u>결혼비용 마련대책</u>	
마련방법	
은행예금	1=해당, 0=비해당
계	1=해당, 0=비해당
부채(사채, 은행융자)	1=해당, 0=비해당
자산매매(부동산 주식채권)	1=해당, 0=비해당
마련기간	개월수
부담률	자녀총결혼비용에 대한 부모의 부담정도(%)

a : 1.무직 2.단순노무직 3.고용된 판매기술직 4.자영상인·제조·기술직 5.사무직 6.전문 기술직 7.경영판리직 8.중소기업주·자본가·고위관리

3. 조사대상 및 자료분석방법

조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년수가 5년이내인 기혼 자녀를 가진 중년기 가정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고, 편모가족은 제외시켰다. 조사대상자를 남편이 있는 가정으로 한정시킨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남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결혼연수가 5년이내인 기혼자 자녀를 가진 가정으로 한정시킨 이유는 사회가 급변하고 있고, 특히 해마다의 물가 상승으로 화폐의 가치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비용에 지출되는 화폐가치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조사대상자를 어머니인 주부로 한 것은 자녀의 결혼에 대해서 아버

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더 많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최성애, 1993).

본 조사에 앞서 1997년 2월 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 5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예비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설문지 문항을 일부 수정, 보완하여 1997년 3월 6일부터 4월 6일까지 본조사를 실시하여 총 450부 중 367부를 회수, 이중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306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 가계의 결혼비용 마련대책에 따른 결혼비용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GLM(General Linear Model)분석을 실시, F-test, T-test를 통해 검증하였고, 각 변수별 하위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

시하였다. 결혼비용 마련대책 중 결혼비용 마련방법은 이분변수이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Probit분석을 실시하였고, 마련기간과 부담률은 중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제 변수들이 자녀의 총 결혼비용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의 사이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기초자료의 분석

(1) 조사대상가계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자녀관련 변수들을 살펴보기 위한 단순빈도와 백분율의 분석 결과는 <표 2>와 <표 3>과 같다.

<표 2> 조사대상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N=306)

변수 (전체평균)	집 단	빈 도 (%)	변수 (전체평균)	집 단	빈 도 (%)
남편의 학력 (13년)	중졸이하 고 졸 초대졸이상	66 (21.6) 94 (30.7) 146 (47.7)	남편의 직업	무 직 노동판매직 자영사무직 전문경영관리직	56 (18.3) 21 (6.9) 104 (30.0) 125 (40.8)
금융자산 (6,048만원)	유 무	298 (97.4) 8 (2.6)	가계	1억 이하 총자산 (36,445 만원)	46 (15.0) 134 (48.3)
실물자산 (30,397만원)	유 무	306 (100.0) 0 (0.0)		1억1만원-3억 3억1만원-5억 5억1만원 이상	54 (17.2) 72 (23.5)
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가계근로소득(만원 / 월)		251.7		210.7	
가계비근로소득(만원 / 월)		59.2		78.4	

<표 3> 자녀관련변수의 특성

변수 (전체평균)	집 단	빈 도 (%)	변수 (전체평균)	집 단	빈 도 (%)
자녀의 성별	남 녀	140 (45.8) 166 (54.2)	자녀의 학력 (15.2년)	고졸이하 초 대 졸 대졸이상	52 (17.0) 27 (8.8) 227 (74.2)
자녀의 직업	무 직 노동판매직 자영사무직 전문기술직	38 (12.4) 4 (1.3) 168 (54.9) 96 (31.4)	자녀의 배우자 직업	무 직 노동판매직 자영사무직 전문기술직	41 (13.4) 2 (0.7) 163 (53.3) 100 (32.7)
자녀의 월소득 (97만원)	50만원 이하 51-100 만원 101-155 만원 156만원 이상	49 (16.0) 165 (53.9) 66 (21.6) 26 (8.5)	사돈 가정의 사회경제적 생활수준 (5.4점)	상(1-3점) 중(4-6점) 하(7-9점)	29 (9.5) 235 (76.8) 42 (13.7)
자녀의 결혼형태	중 매 연 애	67 (21.9) 225 (73.9)			

* 결측값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2) 자녀의 결혼마련대책의 일반적 경향

조사대상가계의 자녀 결혼비용 마련대책은 〈표 4〉와 같다.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방법에 있어서는 은행예금이 80.4%, 계 26.8%, 부채24.8%, 자산매매는 13.1%, 기타 보험 이용은 2.9%순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은행예금이고 그 다음은 계라는 연구결과를 보인 채정숙(198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기간은 평균 36.4개월로 12개월 이하가 10.1%, 13-36개월이 22.9%, 37-60개월이 40.2%, 61개월 이상은 2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결혼비용 부담률은 평균 73.6%로 전체 가계의 40.5%가 자녀결혼비용의 81%이상을 부모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28.4%는 61-80%를 부담하고 있었고, 16.3%는 41-60%, 8.2%는 21-40%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6.5%만이 20%이하의 부담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것은 김보란(1994)의 총결혼비용 중 부모가 평균 84.6%를 부담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부가적으로 질문한 자녀의 결혼비용부담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았을 때, '부모로서 당연하다'

가 54.9%로 가장 많았고, '사회적 관습상·자녀의 경제력의 미약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30.1%, 그리고 '재산상속의 일부이다'는 11.1%, '노후를 위한 투자이다'는 3.3%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자녀의 결혼문제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면서도 결혼할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는 경제적인 부담 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까지도 많이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결혼비용 지출의 일반적인 실태

자녀의 결혼비용지출 내역으로는 주택마련 비용이 2,423만원이고, 신혼살림살이 비용이 723만원, 배우자예물 예단비용이 420만원, 결혼식 비용이 392만원이였으며, 배우자 부모의 예물 예단비용은 289만, 신혼여행 비용과 배우자 친척 예단비용이 각각 156만 원, 합값이나 부케값 등 기타 비용이 72만원 순으로 나타났고, 평균 총 결혼비용은 4,64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저축중앙위원회(1996)의 신혼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비용 지출실태 및 의식조사에서 우리 나라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이 평균 3,290만원이라고 한 것보다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조사대상 지역이 서울시로 한정한 것

〈표 4〉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대책

(N=306)

변수 (평균)	집 단	빈 도 (%)	변수 (평균)	집 단	빈 도 (%)
〈마련방법〉			마련기간	12개월 이하 (36.4개월)	31 (10.1)
은행예금	이 용	246 (80.4)		13 - 36개월	70 (22.9)
	불이용	60 (19.6)		37 - 60개월	123 (40.2)
계	이 용	82 (26.8)		61개월 이상	82 (26.8)
	불이용	224 (73.2)			
부채	이 용	76 (24.8)	부담률 (73.6%)	20%이하	20 (6.5)
	불이용	230 (75.2)		21-40%	25 (8.2)
자산매매	이 용	40 (13.1)		41-60%	50 (16.3)
	불이용	266 (86.9)		61-80%	87 (28.4)
				80%이상	124 (40.5)

으로 인한 물가와 생활수준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한 자녀의 총결혼비용은 조사대상 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의 19배나 차지하는 것인데, 한겨레 신문사에서 조사한 90년대 이후 결혼비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8-25배라는 조사와 유사한 것이고, 총자산에 대한 결혼비용의 비율도 22%나 차지해 자녀가 많은 가계에서는 자녀의 결혼비용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연구문제의 분석

(1) 사회경제적 변수, 자녀관련 변수와의 결혼비용 마련 대책

가. 사회경제적 변수, 자녀관련 변수와의 결혼비용 마련 방법

조사대상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자녀관련 변수와 결혼비용 마련 방법과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결혼비용 마련 방법에 포함되는 은행예금, 계, 사채와 은행융자를 포함한 부채, 부동산 매매와 주식채권매매를 포함한 자산매매를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을 분석한 Probit분석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Pearson χ^2 와 -2Log Likelihood 값을 살펴본 결과 연구모델의 적합성은 유의하였다. Probit 분석에 앞서 독립변인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VIF값과 독립변인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Probit 분석 결과 은행예금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근로소득과 금융자산으로 남편의 근로소득과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은행예금을 이용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즉, 근로소득과 금융자산이 많다는 것은 현금의 융통이 용이하다는 것이므로 자녀의 결혼을 위해 특별히 환금성이 높은 은행예금을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계의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직업으로 남편의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을 위한 방법으로 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전문직이나 자영사무직에 비

해 무직과 노동판매직에서 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행숙(1982)의 연구에서 학력이 낮은 집단에서는 결혼비용 마련을 위해서 계를 이용한다는 결과와 조희금(1984)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저축형태중 계를 선택한 비율이 높다는 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부채 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금융자산과 자녀의 성별 그리고 결혼형태로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부채의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고, 자녀가 여자인 경우보다 남자인 경우에 그리고 연애보다 중매인 경우에 부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자녀의 결혼비용 지출은 단기간에 현금이 필요한 것이므로 가계의 금융자산의 보유가 적으면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채나 금융기관의 융자 등의 부채를 이용하여 결혼비용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결혼형태가 연애보다 중매일 때 부채의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 형태에 따른 결혼비용을 살펴보면, 중매인 경우에는 평균 4,950만원, 연애인 경우에는 3,891만원으로 나타나 중매인 경우에 결혼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의 결혼형태가 중매일 경우에는 부족한 비용을 부채까지 이용하면서 자신의 가계의 체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자녀가 여자인 경우보다 자녀가 남자인 경우에 부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남자의 경우 신혼주택 마련으로 인해 여자의 평균 결혼비용의 3,168만원보다 훨씬 많은 6,245만원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자산매매의 방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직업, 비근로소득, 자녀의 성별, 자녀의 직업으로 남편의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가계의 비근로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성별이 남자인 경우에 그리고 자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자산매매의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남편의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자산매매의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직업은 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직업지위가 낮다는 것은 소득수준도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목돈을 필요로 하는 자녀의 결혼비용마련을 위해

〈표 5〉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자녀관련변수의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방법에 관한 영향력

변 수	은행예금		계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남편의 학력	.114	.083	-.177	.075
남편의 직업	.088	.067	-.107*	.057
근로소득	-.002*	.000	.000	.000
비근로소득	.001	.001	-.001	.001
금융자산	-.000**	.000	.000	.000
실물자산	3.8E-6	3.1E-6	3.9E-6	3.5E-6
@자녀의 성별	-.346	.199	.049	.178
자녀의 학력	.206	.110	-.109	.099
자녀의 직업	.142	.076	-.039	.065
자녀의 소득	-.003	.002	.003	.002
@결혼형태	.003	.227	.082	.199
자녀배우자직업	-.072	.056	-.075	.054
사돈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103	.071	-.033	.066
상 수	-.936		1.235*	
-2 Log Likelihood χ^2	-128.584		-167.238	
변 수	부채		자산매매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Estimated Coefficients	Standard Error
남편의 학력	-.012	.008	.042	.101
남편의 직업	.010	.006	-.136*	.064
근로소득	.000	.000	.000	.001
비근로소득	.003	.001	-.004**	.001
금융자산	.000*	.000	-3.5E-6	.000
실물자산	6.19E-7	3.6E-6	3.9E-6	3.4E-6
@자녀의 성별	.884***	.192	.704**	.245
자녀의 학력	-.044	.102	-.120	.144
자녀의 직업	-.092	.072	.168*	.081
자녀의 소득	.001	.002	-.004	.002
@결혼형태	.464*	.203	.075	.239
자녀배우자의 직업	-.020	.053	.008	.059
사돈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032	.072	-.031	.084
상 수	1.274*	1.274*	2.572**	2.572**
-2 Log Likelihood χ^2	-144.112	-144.112	-96.815	-96.815

* p< .05 **p< .01 ***p< .001

@가변수

장기간 일정한 돈을 불입해야 하는 은행예금이나 계, 부채를 이용한다는 것은 무리가 되므로 자산을 팔아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비근로 소득이 적을수록 자산매매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다시 말해 비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자산매매의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비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이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가계는 저소득층의 가계로서 부동산의 보유율이 적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의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적고, 비근로소득의 원천이 자산소득일 경우에는 부동산등의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은 그 가계의 소득원이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자녀가 남자인 경우에 자산매매의 방법을 더 많이 이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채이용의 방법과 같은 맥락으로 결혼비용 중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신혼주택을 주로 남자가 마련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직업 지위가 높을수록 자산매매의 방법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결혼비용 지출이 더 많다는 최경숙(1994)의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결혼비용 마련 방법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수록 부채나 자산매매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결혼비용을 위해 미리 준비하지 않거나 과다한 자녀의 결혼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채나 자산매매등의 가계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재정문제가 됨을 알 수 있다.

나. 사회경제적 변수, 자녀관련 변수와의 결혼비용 마련 기간

조사대상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자녀관련 변수와 결혼비용마련 기간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결혼비용 마련기간을 종속변수로 하여 사회경제적 변수와 자녀관련변수와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결과 결혼비용마련 기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의 직업과 자녀의 결혼형태로 나타났으며, 제변수의 설명력은 8.6%였다.

즉, 자녀의 직업지위가 낮을수록 결혼비용 마련 기

〈표 6〉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자녀관련변수의 결혼비용 마련기간에 관한 영향력

독립변수	결혼비용 마련기간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남편의 학력	-.280	-.014
남편의 직업	.784	.056
근로소득	-.014	-.092
비근로소득	-.045	-.125
금융자산	.000	.028
실물자산	-.000	-.016
@자녀의 성별	.089	.001
자녀의 학력	-4.008	-.045
자녀의 직업	-1.578	-.203**
자녀의 소득	.050	.086
@결혼형태	11.982	.156**
자녀배우자직업	1.103	.059
사돈가정의	2.800	.121
사회경제적 수준		
F-value	2.099*	
Adjusted R-square	.057	

**p<.01

@가 변수

간이 길었고, 연애보다 중매인 경우에 결혼비용 마련 기간이 길었다. 자녀의 결혼형태가 중매일 경우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기간이 긴 것은, 중매결혼은 부모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중매결혼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경우 자녀의 결혼준비도 미리 미리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사회경제적 변수와 자녀관련변수의 결혼비용 부담률에 관한 영향력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자녀관련 변수에 따른 결혼비용 부담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자녀의 학력이 높을수록 결혼비용 부담률이 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긴 교육기간으로 인해 자녀의 교육기간 후 결혼 전까지의 기간이 짧아 자

〈표 7〉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자녀관련변수의 결혼비용부담률에 관한 영향력

독립변수	결혼비용부담율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남편의 학력	1.014	.061
남편의 직업	.728	.065
근로소득	.022	.183*
비근로소득	.043	.150*
금융자산	-.000	-.014
실물자산	.000	.052
@자녀의 성별	4.090	.079
자녀의 학력	6.435	.226***
자녀의 직업	.376	.024
자녀의 소득	-.119	-.258***
@결혼형태	.906	.015
자녀배우자직업	-1.323	-.088
사돈가정의	.627	.033
사회·경제적 수준		
F-value	7.052***	
Adjusted R-square	.205	

*p< .05 ***p< .001

@가 변수

네가 스스로 결혼비용을 마련할 기간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의 소득이 적을수록 결혼비용 부담률이 커지는 것은 자녀의 소득이 적을수록 자녀의 저축정도의 수준도 낮을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률은 높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김모란(1994)의 연구에서 자녀의 학력이 대졸 이상일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부모의 부담률이 더 커지며, 자녀의 소득이 적을수록 부모의 부담률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2) 결혼비용 마련대책에 따른 결혼비용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대책에 따른 결혼비용의 분

석결과는 〈표 8〉과 같다.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대책에 따라 자녀의 결혼비용에 집단간 차이가 나는 것은 마련방법 중 계, 자산매매였고, 마련기간과 부담률로 나타났다.

제를 이용하는 집단이 계를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자녀의 결혼비용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계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조희금(1984)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다시 말해 학력이 낮은 집단은 일반적으로 물적 담보나 사회지위적 신용 수준이 낮고, 따라서 자녀의 결혼비용과 같은 목돈을 마련할 때 계를 이용하는 가계는 대개 사회경제적 생활수준이 낮기 때문에 자녀의 결혼비용이 더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산매매를 이용하는 집단이 이용하지 않는 집단보다 자녀의 결혼비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산의 매매시 얻게 되는 매매 액의 규모가 크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자산매매를 이용하는 집단은 그 만큼 자산이 많다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때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 더 많은 결혼비용이 든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는 김모란(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결혼비용 마련대책 중 마련기간에 따라서도 자녀의 결혼비용에 집단간 차이를 나타냈는데, 마련기간이 61개월 이상 즉 5년 이상인 집단이 5년 이하의 집단 보다 자녀의 결혼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마련기간과 자녀 결혼비용간에 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리고 부담률에 따라서도 자녀의 결혼비용에 집단간 차이를 보였는데, 자녀의 총 결혼비용중 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이 20%이하인 집단보다 그 이상의 집단에서 자녀의 결혼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총 결혼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 조사대상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 및 자녀관련변수,

〈표 8〉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대책에 따른 총 결혼비용

변수	집단 (빈도)	자녀의 총 결혼비용		
		평균(만원)	t / F값	D*
〈마련 방법〉 은행예금	이용 (246)	4,784	-1.37	
	불이용 (60)	4,019		
계	이용 (82)	3,577	2.90**	B
	불이용 (224)	5,020		A
부채	이용 (76)	5,207	-1.18	
	불이용 (230)	4,444		
자산매매	이용 (40)	9,469	-3.96***	A
	불이용 (266)	3,907		B
마련기간	12개월 이하 (31)	4,068		B
	13 - 36개월 (70)	4,241		B
	37 - 60개월 (123)	5,291	2.65*	B
	61개월 이상 (82)	6,200		A
부담율	20% 이하 (20)	2,161		B
	21 - 40% (87)	3,820		A
	41 - 60% (50)	4,373	3.25*	A
	61 - 80% (25)	4,276		A
	80% 이상 (124)	5,553		A

*p< .05 **p< .01 ***p< .001

a : D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자녀 결혼비용 마련대책과 총 결혼비용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총 결혼비용에 유의한 변수로는 가계의 근로소득, 금융자산, 자녀의 성별, 자녀의 결혼 형태, 부채이용, 자산매매의 이용, 결혼비용 마련기간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인 영향력을 자산매매의 이용($\beta=251$), 근로소득($\beta=155$), 금융자산($\beta=135$), 부채이용($\beta=133$), 마련기간($\beta=131$), 자녀의 성별($\beta=129$), 결혼형태($\beta=113$)순으로 제 변수의 설명력은 40.7%였다. 즉, 자산매매를 이용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자녀의 총 결혼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 마련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성별이 여자보다 남자인 경우, 연애보다 중매인 경우에 자녀의 결혼비용이 증가하였다.

가계의 사회적 지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의 학력이나 직업은 유의하지 않고 근로소득이나 금융자산이 자녀의 결혼비용에 유의한 것은 자녀의 결혼비용이 가계의 사회적인 특성보다는 경제적 변수에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부채나 자산 매매를 이용한 경우에 자녀의 결혼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방법에 비해 부채나 자산매매의 경우 큰 목돈을 마련하는 방법이라는 것

〈표 9〉 총 결혼비용에 관한 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

독립변수	총 결혼비용	
	B (비표준화계수)	β (표준화계수)
<사회경제적 변수>		
남편 학력	.072	.073
남편 직업	-.091	-.080
근로 소득	.110	.155*
비근로 소득	.101	.115
금융자산	.073	.135*
실물자산	.008	.063
<자녀관련 변수>		
@자녀의 성별	.108	.129*
자녀의 학력	.086	.060
자녀의 직업	.051	.040
자녀의 소득	.149	.093
@결혼형태	-.094	.113*
자녀배우자의 직업	.098	-.058
사돈가정의 사회 경제적 수준	.091	.054
<결혼비용 마련대책>		
@은행예금	.021	.010
@계	-.045	-.041
@부채	.391	.133**
@자산매매	.211	.251***
마련기간	-.018	.131**
부담률	-.69	-.014
F-value	10.343***	
Adjusted R-square	.368	

*p<.05 **p<.01 ***p<.001

@가 변수

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가 남자인 경우 대부분 주택비의 부담으로 인해 총 결혼비용이 여자보다 많은 것은 결혼비용에 주택비용을 포함시켜 결혼비용에 대해 조사하고 연구한 연구들과 일치하는 것이다(김모란 1994 : 최경숙 1995, 정용선 1995 : 저축추진중앙위원회 1996). 또한 결혼의 형태가 연애

보다 중매인 경우에 총 결혼비용이 많은 것은 중매 혼이 연애혼보다 부모의 관여가 더 많고, 상대방과 상대방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많이 고려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애보다 중매인 경우에 혼인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김경희(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 것이다.

그리고 결혼비용 마련 기간이 길수록 자녀의 결혼비용이 증가한 것은 비용마련과 기간의 관계가 정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녀관련 변수중 자녀의 사회 경제적 변수로 볼 수 있는 자녀의 학력이나 직업, 자녀의 소득은 자녀의 총 결혼비용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이것은 자녀의 결혼에 있어서 당사자인 자녀의 특성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자녀의 결혼비용에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혼이 당사자간의 일이 아니라 집안과 집안의 만남과 결합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자녀의 결혼비용은 자녀의 사회경제적 특성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결혼비용 마련대책에 따라서도 자녀의 결혼비용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자녀의 결혼비용 지출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대비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계의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대책과 자녀의 결혼비용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방법은 자녀관련 변수보다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돈을 쉽게 유통할 수 있는 부분으로 투자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

적 제도적 차원에서 가계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금융상품이나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자녀의 결혼비용 마련 기간과 부담률은 자녀의 직업지위가 높을수록 마련 기간은 짧고, 부모의 부담률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학력 자녀를 둔 가계는 자녀의 교육비에 다시 결혼비용으로 그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녀의 학령기가 끝나고 자녀 진수기에 한꺼번에 가지는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장기계획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혼인비용은 실제에 있어 훨씬 많은 비용 지출이 발생하므로, 일찍부터 계획적으로 결혼비용을 준비한다면, 계획에 큰 무리나 부담 없이 행사를 치르면서, 안정된 가계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녀 결혼비용 부담이 적지 않은 결과를 볼 때 미혼 남녀 및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결혼준비교육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러한 자녀의 결혼비용에 대한 부모의 의존경향이 부를 세습시키고 계층간 이동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사회는 더욱 폐쇄화, 불균등화 양상을 빚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이 때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에게는 계층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금융 및 사회복지적인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결혼비용을융자해 주는 것이나 비용부담이 적고 신혼생활에 적합한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것 뿐 아니라 할부제공급방식을 채용하고 기본적인 가구시설과 공동시설을 주택시설에 일반화 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의 결혼비용은 자녀관련변수보다는 가계의 사회경제적 변수와 결혼비용 마련 대책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의 결혼이 당사자간의 결합보다는 가족간의 결합의 의미가 크고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비용도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자녀의 결혼비용 지출에 있어 상류층이나 지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각성과 솔선수범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하류층에서는 자기 가계의 수준에 맞는 결혼비용 지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혼수

의 과다지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양가 부모나 당사자들의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불필요한 품목이나 비용을 줄여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며, 학교교육이나 각종 시민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에서 합리적인 결혼비용 지출에 대한 교육과 계몽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극히 일부에서 나타나는 과다혼수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전전한 삶을 소개함으로써 혼수나 예단이 가족갈등까지 야기시킨다는 그릇된 인식을 없애도록 하는 등 교육적 기능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와 자녀가 결혼의 진정한 의미와 결혼에 있어 수반되는 비용이나 혼수에 대해서도 합리적이고 검소한 지출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눔으로해서 결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재산을 매매해야 할 만큼의 많은 비용을 들여서 결혼시켜주는 것이 부모된 도리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바른 생각과 가정관을 심어주는 일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결혼이 부모를 떠나 진정한 독립적인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결혼비용의 문제를 스스로 독립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가계의 결혼비용 마련 대책과 결혼비용에 관한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고려하여 앞으로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주부로 제한하여 연구대상 지역, 계층 등을 고려한 다양적 차원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과 사회계층을 고려하여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총 결혼비용만을 변수로 하여 조사대상 가계의 특성과 결혼비용 마련 방법 대책을 살펴보았고 결혼비용 지출내역을 세분하여 살펴보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좀더 자세한 심층적 분석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결혼은 하나의 사회제도이므로 사회경제적인 특성 외 가치관이나 심리적 특성도 결혼비용에 영

향을 미치리라고 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의식과 태도를 포함한 가치관 변수나, 심리적 변수를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결혼비용 지출행동을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화폐적인 액수를 통하여 자녀의 결혼비용을 양적인 측면으로 제한하였으나, 결혼에 투자되는 부모나 결혼당사자의 노력과 시간, 심리적인 비용 등을 고려한 질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도 함께 병행된다면 결혼비용 전반에 대해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김경희(1983). 한국도시가족의 혼인비용 지출현황에 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 김용선(1995). 전통혼례의 사회교화적 의의.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3) 김모란(1994). 한국사회의 혼인거래관행에 대한 연구 - 도시중산층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 박민자(1991). 도시중간계층의 혼인거래관행에 관한 연구.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5) 박숙자(1991). 도시 저소득층의 혼인양태.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6) 보건복지부(1969). 「가정의례해설」.
- 7) 안정남(1991). 현대 결혼 의례의 의미.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혼인」, 서울: 또 하나의 문화
- 8) 이기춘, 조은정(1992). 도시 신혼기가계의 결혼비용과 신혼주거자금에 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95-113
- 9) 이행숙(1982). 우리나라 여성의 결혼의식과 혼수지출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0) 유현주(1991). 미혼남성의 결혼의식 및 결혼비용 지출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1) 장은영(1990). 도시주부의 혼수관행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2) 전국주부교실중앙회(1984). 혼수에 관한 소비자 의식. 소비자, 56, 9-12.
- 13) 정용선(1995). 혼수의 사회적 의미 및 혼수가 미치는 영향 ; 사회교환이론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3(6), 115-136.
- 14)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6). 혼인비용지출에 관한 실태 및 의식조사.
- 15) 조선일보(1997). 「결혼적령기」, 1월 8일.
- 16)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 형태분석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57-64.
- 17) 채정숙(1980). 주부들의 저축형태에 관한 연구. 「한사실업전문대 논문집」, 제15집
- 18) 최경숙(1995). 결혼 의례절차와 물질적 재화교환의 관행에 대한 연구 - 도시중간계층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9) 최성애(1993). 「혼수전쟁」. 서울: 청산.
- 20) 한계례신문(1996). 「결혼비용 월급 16배」, 9월 24일.
- 21) 한국소비자보호원(1990). 「혼수실태조사결과」.
- 22) 홍공숙, 김순미, 김연정(1995). 미국노인의 유산 상속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2), 45-55
- 23) Becker, G.S.(1974).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1063-1094.
- 24) Becker, G.S. & Tomes, N.(1979). An equilibrium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1153-1189.
- 25) Casey, James(1989). The History of the Family. Oxford : Blackwell.
- 26) Ekeh, Peter P.(1976). Social Exchang Theory. Harvard University Press.
- 27) Goody & Tambiah(1973). 「Bridewealth and Dowry」. Cambridge University Pres.
- 28) Homans C. George(1974).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Harcourt, Brace

- Jovanovich.
- 29) Hughes, Diane Owen(1985). From Brideprice to Dowry in Mediterranean Europe, *The Marriage Bargain*, Kaplan M. A.(ed.). Harrington Park Press, New York and London.
- 30) Hurd, M.D.(1987). Saving of the elderly and desire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7, 298-312.
- 31) Hurd, M.D.(1989). Mortality risk and bequest. *Econometrica*, 57, 779-813.
- 32) Kaplan, M.A(1985). For Love or Money : The Marriage Strategies of Jews in Imperial Germany.
- The Marriage Bargain, Kaplan M. A.(ed.).
- 33) Lambiri-Dimaki, J.(1985). Dowry in Modern Greece : An Institution at the Crossroads Between Persistence and Decline. *The Marriage Bargain*, M. A.(ed).
- 34) Menchik, P.L. & David, M.(1983). Income distribution, lifetime saving and bequests. *American Economic Review*, 73, 672-689.
- 35) Tomes, N.(1981). The family, inherita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938-958.